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877”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3”를 “8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60”을 “85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0,184”를 “19,965”로 하고, 일반직 계 “20,184”를 “19,9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160”을 “19,941”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청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세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세무서)	68명
2) 악의적 채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59명
3)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4)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7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7</u>	<u>870</u>	-7
•	•	•	
•	•	•	
일반직 계	<u>873</u>	<u>866</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60</u>	<u>853</u>	-7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184</u>	<u>19,965</u>	-219
일반직 계	<u>20,184</u>	<u>19,965</u>	-219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160</u>	<u>19,941</u>	-21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4 - 2351